

언론중재 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박 중 호

(전 청주대학교 교수)

I. 머리말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제도이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제도는 언론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구제제도이다. 조정과 중재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인 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21조의 규정과 같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하되(언론의 자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는 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공적인 책임)는 것이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 것은 당연하다.

언론은 국가경영, 지역개발 그리고 인간의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보전달 수단이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의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말이 이를 잘 증명한다. 이렇듯 언론은 그 어느 것보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중요한 만큼 그 영향력도 대단하다. 그렇기에 언론은 ‘권력의 제4부’ 또는 ‘무관(無冠)의 제왕’이라 불리고 있다. 언론은 이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자칫하면 그 힘을 이용, 본래의 임무를 이탈하여 국민의 명예나 권리 그리고 인격을 침해하기 쉽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동기이다.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언론중재법이 제정·공포되자 언론계의 일각에서 던진 “그동안 기자들이 누리던 태평성대는 끝이 났다.”느니 “언론은 지금까지 누리던 절대강자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등의¹⁾ 말들은 언론

1) 박중호. “공동선의 깃대”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회보, 2005. 11. 22.

의 자유가 얼마나 컸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물론 언론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언론이 가지는 공적인 책임의 범위 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단 한사람이라도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또는 인격에 손상을 입는다면 언론은 이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언론중재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사후라도 침해된 명예와 권리 그리고 인격을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의 자유보다 공적인 책임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철학적 기초로 삼고 언론중재에 임하여야 한다. 언론보도가 사실성, 공공성, 책임성, 중립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철저히 따지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무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려 하여도 독자나 국민들이 언론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제도의 효과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가치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을 상대로 언론중재제도의 목적과 내용 및 절차를 자세하게 알리는 홍보에 진력하여야 한다.

II. 언론중재제도

1. 탄생과 변천

‘언로(言路)가 뚫려야 한다.’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국민이 주인 된 자리를 말할 때마다 등장되는 말이다. 이 말은 언로가 뚫리고 정보가 공유될 때만이 국민이 존재하는 국가, 인류가 존재하는 세계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언론은 정보공개 의 수단인 점에서 그 자유가 강조된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기본법인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시대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성숙되고 국민의 수준이 향상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물결에 부응하여 언

론의 자유는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언론의 공적 책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언론의 사회목탁으로서의 가치가 흔들리게 되고 신뢰도도 저하되게 되었다. 이는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계에 언론의 자유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언론중재제도이다.

한국에 있어서 언론중재제도는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태동되었다.²⁾ 이법에 의하여 정정보도청구권(사실은 반론보도청구권임)이 도입되고 3개월 뒤인 1981년 3월31일에 언론중재위원회가 가동되었다. 그 후 언론기본법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탄생동기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일자 폐지되었으나 그동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 왔던 반론권제도는 1987년 11월 28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과 방송법에 일부 흡수됨으로써 명맥을 잇게 되었다.³⁾ 언론중재관련법은 4년 뒤인 1991년 12월 31일자로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종합유선방송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1995년 12월 31일 정간물법의 개정을 통해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정식 명칭이 채택되었으며, 2005년 1월27일 언론중재법이 제정·공포되어 그해 7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1981년에 제정된 언론기본법 시행이후 24여년에 걸친 언론환경의 변화(언론의 사회적 사명에 대한 역할강조)와 언론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언론중재위, 정당, 시민단체 등) 각계의 요청에 따라 입법화한 것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규정한 구 정간물법과 방송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규정을 통합, 피해구제제도를 단일화한 특징을 갖는다.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이 정간물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i) 정간물법, 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포괄하여 언론중재법으로 단일화한 점, ii) 종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 실질적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기능을 명시한 점, iii)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신설한 점, iv) 언론중재위

2) 한국에 언론중재제도를 태동시킨 정부가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라는 점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신군부는 당시 사전검열을 통해 언론보도를 부당히 간섭하고 통제했음은 물론이고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이라는 문서를 내려 보내 기사의 단수와 내용까지 통제했다. : 김종배,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 2005, 5. P. 1.

3) 상계논문, P. 2.

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한 점, v)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점, vi)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조정 및 중재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과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vii)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언론에 대한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점, viii) 중재위원의 숫자를 80인 이내에서 90인 이내로 확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2. 주요내용 및 특징

1980년 말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 규정을 모델로 하여 도입된⁴⁾ 언론중재제도는 헌법재판소의 말과 같이 한국의 독특한 제도로서 화해에 의한 명예로운 해결의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부에 직업법관 이외에 언론계의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언론과 피해자 쌍방을 이해시키는데 유리하고,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절차 이전 단계에서 절충할 기회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 재판절차상의 비용과 번잡함을 피하여 피해구제를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헌재.1999. 7. 22. 결정 96년 헌법19)

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명확화.

언론중재법은 제3조(독립)와 제4조의 규정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및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4) 황용경,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자료, 2005, 10, 21, P. 2.

하고 있다. 이렇듯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하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의 공적(사회적)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철학적 기초이기도 하다.

2)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언론기본법에는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으로 실제화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공정성, 자율성 등을 갖춘 조직으로서 전면에서 언론중재제도의 이념을 구현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3)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의 다양화 도모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사(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 등)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구제제도이다. 이러한 구제제도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인격권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관련물 폐기청구, 명예회복청구, 시정권고청구, 선거기사심의 등으로 나누어진다.

① 정정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는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5항).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언론사에 대하여는 ‘청구인’, 중재위에 대해서는 ‘신청인’, 소송상 법원에 대해서는 ‘원고’로 지칭됨)의 입증책임이 없다. 피해자는 언론사에 대하여 먼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청구 후 언론사와의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이나 또는 언론사에 대한 청구 없이 곧 바로 정정보도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언론사의 정정보도는 그 사실 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 방송을 제외)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조정·중재의 신청 및 소송

의 제기는 문제의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언론보도가 있던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조정·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6호). 반론보도 청구도 정정보도청구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제2항). 그러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입증 필요 없다. 반론보도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및 제소에 관해서는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16조 제3항).

③ 추후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는 언론에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그 후 형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결과 사실을 후속보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이 후속보도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제17조 제2항).

④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언론사나 중재위원회(조정·중재 신청) 및 법원 등에 제소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일반 쟁송사건과 같이 언론사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와 별도로 또는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8조 제6항). 법원은 언론피해를 이유로 하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는데(동법 제29조) 이는 손해배상청구에도 마땅히 적용된다고 본다.⁵⁾

⑤ 인격권 보장 청구

언론중재법 제5조에서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

5) 석희태, “언론중재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 2006, 4, 21, P. 10.

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고의·과실이 있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를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그 침해의 정지를, 권리침해의 우려가 명백한 자에게는 침해예방을,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 필요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30조).

⑥ 명예회복처분 청구

명예회복처분청구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사과광고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처분을 취해줄 것을 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처분 중 정정보도 방식의 경우는 통상의 경우처럼 언론사의 고의 및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⑦ 시정권고 청구

언론중재법(제32조)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언론보도 내용이 옳지 못하거나 잘못되거나 국익, 공익, 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청구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선거기사 심의

언론중재제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일전 120일까지 중재위원회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불공정, 비형평, 편파성, 반공익성, 정치적 개입 등의 선거보도에 대하여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권고·주의·경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반론 보도청구 회부사건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고충처리인제도 설치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중재법 제6조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옴부즈맨(ombudzman)제도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보도내용이나 취재활동 등을 독자를 대신하여 감시하고 독자로부터 언론

에 대한 불만과 고충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사람이다. 언론사 외부가 아닌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는 것은 언론기관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문제를 제3자에게 맡기기보다 먼저 당사자인 언론사와 독자 또는 시청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⁶⁾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등을 담당하며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여야 한다.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언론중재제도는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들이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에 손해를 보았을 경우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를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게 하고 손해를 보상받게 하려는 제도라는 특징을 갖는다. 독자, 시청자, 국민의 편에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다. 언론은 그 어느 것보다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언론중재제도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i)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지나치며, ii)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만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iii)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할 윤리적 판단사항까지 법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iv)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책임정도와는 다른 인터넷 언론들까지도 다른 매체와 동등하게 다룸으로써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3. 언론조정 절차

언론중재제도는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절차가 까다롭고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분쟁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송에 갈음, 중재와 조정과 같은 분쟁 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를 활용한 제도이다.

1) 중재부

언론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문화관광부장관 위촉)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6) 상계논문, P. 5.

한다.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언론중재법 제9조 제1항). 현재 각 중재부마다 현직 부장판사가 중재부장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조정신청 및 조정기관

조정신청은 피해자 또는 언론사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8조 제3항).

조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재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조정대리인

언론중재제도는 조정대리인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8조 제7항).

4) 조정기일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조정대리인이 출석한다. 조정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

5) 증거조사

중재부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사건의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20조 제1항).

증거조사는 서증조사, 검증,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참고인의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중재심리에서의 증거조사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증거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⁷⁾

7) 조수정, “언론중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워크숍 자료, 2004, P. 5.

Ⅲ. 언론중재위원회

1. 설치배경

언론은 국가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나 현상들 또는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공공기관, 책임자들의 국가 및 사회운영방향 등을 비롯 지구촌의 움직임 중 주요한 것들을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는 뉴스매체이다. 공공기관이나 사람들은 이 매체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 있고 공공기관은 그 흐름을 대상으로 갖가지 정책 및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간다.

언론은 세상의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기사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것보다 큰 가치를 갖게 되고 그 가치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언론을 가리켜 무관의 제왕이라 부르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형평성 및 계도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언론의 책무(accountability)이다.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공적 또는 사회적 책임이다.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는 만큼 그에 비례한 공적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장치가 언론중재위원회 설치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근거 1981년 3월 31일 설립된 후 사반세기인 25년이 넘는 세월동안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설립 초기에는 언론계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의 핵심중재대상이었던 반론보도청구권의 위헌시비도 제기된바 있으나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언론은 언론기관이 누릴 수 있는 자유만큼 사회적 책임도 지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왔다. 실제로 지난 25년간(1981. 3. 31.~2006. 8. 31.) 언론조정 건수가 9,930건에 이르는 것과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신청인의 96.4%와 피신청인 95.0%가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한⁸⁾ 것 등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2. 성격 및 기능

1) 성격

법은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의 경우는 법원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등의 이원적 구제방법을 취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의 조정·중재, 손해배상 등의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론중재법 제8조 제1항), 공무원, 정당인, 현직언론인, 선거후보자 등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는 중립성(동법 제8조 제2항), 법관, 변호사, 전직언론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전문성(동법 제7조 제3항), 중재위원회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인정하는 공정성(동법 제10조), 중재부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는 민주성(중재법 제9조 제2항), 중재·조정은 중재부에서 담당하고 중재부는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명령권과 증거 조사권을 인정하고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처를 설치한다는 능률성(동법 제9조, 제20조, 제11조),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 규칙제정 등의 권한은 위원회가 갖도록 한다는 자율성(동법 제7조 제2항)등을 확보하고 있다.

2)기능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앞에서 제시한 언론중재제도의 주요내용과 같다.

3. 기구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 중재부, 사무처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⁹⁾

위원총회는 중재위원 80인으로 구성되고 임원, 운영위원, 시정권고위원 등을 선출하며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사업실적과 결산 및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제출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중재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기본규칙 이외의 제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선거기사

8) 권혁남, “언론중재법시행에 따른 언론중재제도의 변화와 과제”,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 2006, 7, 5, P. 4.

9)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편람, 2005, PP. 10~11.

심의위원의 위촉동의에 관한 사항, 기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중재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언론보도내용의 국가, 사회,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자체적으로 혹은 신청을 받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권고심의기준의 제·개정 기타 시정권고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재부는 중재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전국에 16개소(서울6,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에 설치되어 있다. 중재부는 조정 내지 중재 신청건에 대하여 정정, 반론,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처는 조정심의본부(조정1~2팀, 심의팀),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법무상담팀, 교육홍보팀, 조사연구팀), 운영본부(기획혁신팀, 예산회계팀, 총무팀)등 2본부 1센터 9팀과 10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IV. 언론중재위원회의 미래과제

인간은 정보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 언론은 정보교환의 최고의 수단이다. 그렇기에 언론은 인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은 인류의 삶을 비옥하게 하는 일을 맡는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언론은 언론의 공적인 책임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어느 누구나 권력기관으로부터 압력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헌법정신은 어디까지나 기사로서의 공정성, 객관성, 사실성, 중립성, 자율성, 형평성, 정의성 등의 기준과 부합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기준들과 부합되지 않는 기사는 인간의 삶을 비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게 하는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자들은 맑은 양심, 성숙한 양식 그리고 대낮같이 밝은 정직을 생명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발표(방송)하여야 한다.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기사는 생명이 없는 죽은 기사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생명이 출렁이는 기사를 통해 언론기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언론기자들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외압 및 이권에 굴복하거나 야합하기가 쉽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무기로 삼아 탈선 및 탈궤도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두된 것이 언론의 공적책임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고 그 필요성에 의해 탄생된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설립 된지 4반세기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 무엇보다 언론의 풍토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막강한 힘을 가졌다하여 권력의 4부로 일컬어지는 그 힘은 언론이 가진 보도의 독점성 및 과급성 때문이 아니라 언론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양심, 양식, 전문성, 사실성, 정의성에 입각한 양질의 기사들 때문이었음을 알게 한 점이다. 그렇기에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가치(소식전달+인격권보장)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일을 담당할 기구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은 제고 및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미래과제이다.

1. 중립성·독립성 및 기능강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으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소송절차보다는 조정과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및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 정당원, 공직선거후보자, 현직언론인들을 배제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제1항에서와 같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중립성과 독립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에 대한 분쟁해결기구로서 출범하였고 언론피해구제법 하에서도 분쟁해결을 핵심 업무로 하고 있다. 분쟁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구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분쟁해결 기구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중립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결정을 이해관계자(당사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강제력이 없는 기관인 점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는 필수조건이 된다.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i)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 중재위원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ii)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원 지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게 하며, iii) 중재부의

기구를 확대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 등 언론분쟁전반에 대하여 법원제소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언론사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언론은 사회목탁인 점에서 국민의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실에 근거함은 물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공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여야 한다. 어떤 이해관계를 개입시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나 기관을 옹호하는 기사나 보도는 절대 금물이다.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준들을 제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회나 국가는 어느 사회나 국가보다 건강하고 인간들의 삶은 더 없이 비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과 자세는 기자들이 스스로 정립하고 실천할 것이 요구된다. 정확하고 정직하며 정의로운 소식 생산자 및 보급자로서의 기자상(記者像) 정립이야말로 기자들이 추구해야 할 궁지이고 자존심인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기자상을 전제로 한 국민보호용 장치이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장치를 빛나게 하기 위한 기구일 뿐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언론다운 언론의 자리를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언론과 중재위원회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인지도 향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구로 설립 된지도 25년이 지났는데도 국민들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고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아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다. 국민들이 주식(主食)처럼 매일 대하는 것이 언론인데도 국민들은 자기들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생각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렇듯 국민의 관심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의 속성(분쟁해결기관)탓도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사의 소극성에 기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영역을 알리는 데에 소홀했다. 20

10) 처음 제정된 1980년 12월 31일의 언론기본법에서는 반론보도 청구권(당시 명칭은 정정보도 청구권)을 인정하였고 반론을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었으나 2005. 1. 27. 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필요적 전치규정이 선택적 청구(언론중재위원회로 갈수도 있고 법원으로 갈 수 있는)로 변경되었다.

여 년간 신문에 칼럼을 쓴 사람인데도 언론중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물론 본인의 정보부족 탓도 있지만)이 이를 잘 대변한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하고 중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일에만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소극적 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소극성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상황을 알리는 안내지를 비치하는 일, 도나 시·군 회보에 게재하여 국민이 알게 하는 일, 신문이나 방송에 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사건 및 결정 내용’을 보도케 하는 일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언론사에서는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의 청구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언론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했으니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주문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다. 그렇기에 언론사는 겸허한 자세로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고압적, 권위적 자세로 고집을 부리거나 책임 회피하려는 판단이나 행동은 금물이다. 언론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지탱되는 즉 독자들이 재산이고 독자들이 실질적인 주주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독자나 제3자의 주장을 저항적 개념으로 보지 말고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독자관(讀者觀)이 이럴진대 같은 맥락에서 독자나 시민들의 청구사건을 다루는 언론중재위원회와도 대칭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고 분쟁사건과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사항도 마땅히 언론에 보도하여야 한다.

3. 성숙한 판단력의 구비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은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더구나 언론피해는 i)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ii)동시다발적이며(한 언론사가 보도하면 다른 언론사도 연달아 보도), iii)오보든 정보든 그 결과와 파급효과는 동일하고, iv)법적보상제도가 비현실적이며(보상액 낮게 책정), v)언론사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고(연예인과 정치인에게는 치명적), vi)고위관료를 비롯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언론피해에 대해 취약하며, vii)일반적으로 국민이나 독자들은 언론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¹¹⁾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 즉 성숙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법을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분쟁대상의

11) 김창룡, “언론피해구제제도 활성화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 2004, 5, PP. 1~3.

핵심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사실성, 객관성, 정의성, 중립성 등의 기준 위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위원들의 성숙한 판단력은 언론사들에게는 언론보도의 공적 책임에 대한 지침으로서 구실을 하게 될 것이고 독자나 국민들에게는 언론으로부터 입은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줌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의 이념을 구현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나 조정의 현장에서 빛나간 보도나 조정으로 인하여 언론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언론중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용어로는 ‘사실’과 ‘진실’을 들 수 있다. 흔히들 사실과 진실을 따로 떼어놓고 보는 2분법적 관점에 길들여져 있다. 이러한 2분법적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과 진실은 하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진실은 사실이 사실일 수 있는 요건일 뿐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실이 사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진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실이 아닌 사실은 사실일 수 없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백만 원을 건넸을 경우 무슨 명목(동창회비, 차용한 돈의 변제 등)으로 주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기사작성상의 필수요건이다. 만일 내용이 없이 돈만 건네 준 것으로 보도되었다면 이는 진실 문제가 아니라 보도기사로서의 요건문제인 것이다.

분쟁대상에 대한 빠른 판단은 본질에 눈을 맞추면 쉽게 도달할 수 있다.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다.

4. 접근성 용이

언론중재위원회는 독자, 국민, 시민단체 등을 비롯 이용필요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민간 사회단체들이 자리한 곳이나 대학가 그리고 공원근처, 지방자치단체 정문 앞 등이 이상적인 장소이다. 또한 신청방법도 단순화 할 것이 요구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방법과 궤를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중재신청도 과거에는 방문접수로 한정하였던 것을 언론관계법을 단일화하면서 서면, 구술,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발전적 변화이다. 두말할 것 없이 신청방법은 신청희망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진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수요자중심의 운영방법이다. 편리한 장소, 손쉬운 절차,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상시 신청가능 그리고 문턱을 낮추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

고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고 이에 대하여 언론사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5. 중재위원의 전문성 확보

중재위원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을 임무로 하는 만큼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에 대한 기초 지식, 언론보도의 기사로서의 가치와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언론사의 사명, 국민의 기본권, 시비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판단력,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신념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역별로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춘 인사들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다만 찾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간 언론중재위원으로 추천되어 위촉된 사람들 중에는 위의 조건과 거리가 먼 경우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언론중재위원의 위촉과정이 행정기관 편의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임의적 추천과 문화관광부의 자의적 선택에 의하여 위촉되었다. 그렇기에 광역자치단체와 왕래가 없거나 미미한 인사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천대상이 될 수 없었고 그리고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문화관광부의 의도에 의하여 다른 인사로 교체되는 경우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위원이 되곤 하였다. 중재위원의 자리는 전리품이나 정부기관의 하사품의 자리가 아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임무와 위상을 위해서도 적격자를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언론중재위원도 언론인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¹²⁾ 언론중재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i)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자. ii)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iii)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언론사의 취재·보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자. iv)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다. 언론중재는 글자 그대로 언론보도에 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언론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은 언론에 대하여 남다른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언론사에 근무한 경력을 무기로 삼아 철저하게 독립적이어야 할 중재활동에서 언론사의 편을 들 수 있다는 가정을

12) 상계논문, P.17.

배제할 수가 없다. 만에 하나라도 편견을 가지고 중재업무에 임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에도 위배됨은 물론 피해자를 억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의 분포 상 언론인 출신이 많은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여기에 있다. 때문에 언론중재위원의 위촉규정 중 제3호의 규정은 제4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 신청층의 확대

충북중재부의 경우 과거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는 층은 언론사와 공공기관 등이 주를 이루었다. 즉 언론사 대 언론사, 언론사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의 기관내지 단체의 청구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언론조정 신청인 층이 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론 언론사에 대한 일반인의 신청이 부재하거나 극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권위와 막강한 조직력을 구비하고 있어서 언론사와 대항하기 쉬운 반면, 일반인은 언론사의 높은 문턱(영향력, 파급력, 보복성)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탓과 아직까지 개인들의 권리주장에 소극적인 풍토 때문이라고 본다. 일반인의 신청이 미미하다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만큼 언론에 대한 국민권리의 창구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수비적, 제재적 위치(자세)에서 선제적, 보호적 자세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신청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문보도내용을 보고 사실에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전화를 비롯한 의사전달 통로를 이용, 언론중재위에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수 있는 계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도함으로써 신청층을 두텁게 하여야 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언론중재제도의 탄생 근거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그리고 기구 등을 살펴 본 후 언론중재위원회의 미래과제에 관하여 논급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설치배경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여 도입된 언론중재제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

관이다.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언론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장치는 현대와 같은 주권재민(主權在民)시대에 꼭 필요한 기구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인권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중립성·독립성 및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수요자 및 국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누구보다 성숙한 판단력을 구비하여야 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갖대로 하여 중재위원이 선정되어야 하고 언론사 및 공공기관의 이용층을 일반인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든 정부기관이 그러하듯, 언론중재위원회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나 공공기관만이 사용하는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연기자(주역)로 하는 국민의 무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국민의 법익보호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미래는 정보의 시대이다. 언론은 정보의 최고 수단이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첨병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언론매체가 없다면 이 세상은 암흑세계나 다름없을 것이다. 언론이 암흑을 불사르고 대명천지(大明天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언론사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무엇보다 언론은 언론에 주어진 자유만큼 공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을 성역시하여 그 경계를 지키며 쓰여지고 보도하는 기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언론이 지켜야 할 절대 수칙이다. 국민은 건강한 언론(사회목탁)을 바란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엄정한 중재를 원한다.

참 고 문 헌

- 권혁남, “언론중재법시행에 따른 언론중재제도의 변화와 과제”,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자료, 2006.
- 김종배,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자료, 2005.
- 김창룡, “피해구제제도 활성화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자료, 2004.
- 박종호, “공동선의 잣대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회보, 2005.
- 석희태, “언론중재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자료, 2006.
- 양경승, “언론중재법의 개정 쟁점과 방향”,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자료, 2006.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편람, 2005.
- 조수정, “언론중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워크샵자료, 2004.
- 황용경, “새로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자료, 2005.